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13. 12. 5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14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9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3. 11. 26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 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김정진 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,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
-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각 연 3퍼센트로 신설
- 사립학교 및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의 국유재산 대부요율을 1,000분의 25 이상으로 신설

-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
- 용도폐지나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생략 가능 대상을 행정재산에서 구유재산으로 수정하여 일반재산을 포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주민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, 변상금, 교환차금,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반환 이자율을 인하하고, 사립학교 대부료의 요율 및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종교 용도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17조2,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구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,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, 안 제35조에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, 안 제91조제1항, 제91조의2에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반환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,
  - 안 제27조에 사립학교 및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의 구유재산 대부요율을 현행 1천분의 50에서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의 대부요율인 1천분의 25이상으로 인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,
  - 안 제38조에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종교용도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24631호, '13.6.21 일부개정, '13.12.22 시행)사항을 반영하여 구유재산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을 인하하고, 사립학교의 대부료 요율을 국유재산 적용기준에 맞추며, 법 제94조의 2에 따라 안전행정 부장관이 정한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종교 용도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

국유재산의 관리 규정을 상위법령 및 국유재산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개정에 따른 다소간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,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, 점유 사용으로 활용이 곤란한 재산의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, 검토결과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,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
- 나.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각 연 3퍼센트로 신설
- 다. 사립학교 및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의 국유재산 대부요율을 1,000분의 25이상으로 신설
- 라.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
- 마. 용도폐지나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생략 가능 대상을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으로 수정하여 일반재산을 포함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3.10.17~11.6, 20일간) : 의견없음

- 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- 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- 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법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 중 “행정재산”을 각각 “구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영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7조의2 중 “연 4퍼센트”를 “연 3퍼센트”로 한다.

제27조 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 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

제33조 제2항 중 “연 6퍼센트”를 “연 3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연 6퍼센트”를 “연 3퍼센트”로 하며 “할 납부할”을 “분할 납부할”로 한다.

제36조 제1항 중 “연 4퍼센트”를 “연 3퍼센트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“연 4퍼센트”를 “연 3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연 4퍼센트”를 “연 3퍼센트”로 한다.

제38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·사용

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**제91조 제1항**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1조의2**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1조의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)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7조의2, 제33조, 제36조, 제91조의 개정 규정 및 제91조의2 신설 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분할납부에 이자율 적용례)** 제17조의2, 제33조제2항, 제33조제3항, 제36조제1항, 제36조제3항, 제36조제4항, 제9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,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공유재산심의회회의 구성) ① 법 제 16조에 따른 영등포구공유재산심의회 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,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⑧ (생략)</p> 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회의 업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. ~ 다. (생략)</p> <p>제5조(공유재산관리대장)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7조의2(교환차금의 납부)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</p>	<p>제3조(공유재산심의회회의 구성) 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회의 업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구유재산</u>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구유재산</u>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공유재산관리대장) ----- 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7조의2(교환차금의 납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연 3</p>



현행	개정안
<p><u>4퍼센트</u>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.</p>	<p><u>퍼센트</u>의 ----- -----.</p>
<p>제27조(대부료의 요율)</p>	<p>제27조(대부료의 요율)</p>
<p>①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~ 3.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~ 4. (생략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 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 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~ 9. (생략)</p>	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3조(대부료의 납기)</p>	<p>제33조(대부료의 납기)</p>
<p>①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<u>연 6퍼센트</u>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----- <u>연 3퍼센트</u>의 ----- -----.</p>
<p>1. ~ 2. (생략)</p>	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<u>연 6퍼센트</u>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<u>할</u> 납부할 수 있다.</p>	<p>③ ----- ----- <u>연 3퍼센트</u>의 ----- ----- <u>분할납부할</u>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략)</p>	<p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(생략)</p> 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</p> <p>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④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(생략)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제91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 영 제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연 <u>3퍼센트의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황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연 <u>3퍼센트의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연 3퍼센트의 ----- -----.</p> <p>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u></p> <p>제91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 영 제</p>

현행	개정안
<p><u>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<u>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1조의2(과오납금 반환 가산금)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.</u></p>